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20
----------	-------

발의연월일 : 2024. 2. 15.

발 의 자 : 김미애 · 강기윤 · 김은희
이종성 · 권영세 · 권성동
박 진 · 백종현 · 임이자
金炳旭 · 송언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 요청을 해당 관청에 할 수 있음.

그런데 감치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 후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 기간동안 미성년 자녀와 양육부 또는 모의 생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

명령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및 제27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 중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이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 ----- -----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 -----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
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 ④ (생 략)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
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
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
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
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
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
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
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 「가사소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행
명령-----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

----- 「가사소송법」 제64조제1

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갑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27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갑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갑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

항에 따른 이행명령-----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

-----이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